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본 안내문은 2023.05.10.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모든 청약자격 및 요건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해당 기관에서 대상으로 선정되어 당사에 통보된 자 ② 등본 상 원주시(강원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table border="1"> <thead> <tr> <th>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th> <th>추천기관</th> <th>청약통장 구비여부</th> </tr> </thead> <tbody> <tr> <td>장애인</td> <td>강원도청 장애인 복지과</td> <td rowspan="2">청약통장 필요없음</td> </tr> <tr> <td>국가유공자 등</td> <td>강원서부 보훈지청 복지팀</td> </tr> <tr> <td>장기복무 제대군인</td> <td>강원서부 보훈지청 복지팀</td> <td rowspan="3">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분</td> </tr> <tr> <td>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td> <td>국군복지단 복지사업 운영과</td> </tr> <tr> <td>중소기업근로자</td> <td>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td> </tr> </tbody> </table>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장애인	강원도청 장애인 복지과	청약통장 필요없음	국가유공자 등	강원서부 보훈지청 복지팀	장기복무 제대군인	강원서부 보훈지청 복지팀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분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 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장애인	강원도청 장애인 복지과	청약통장 필요없음													
	국가유공자 등	강원서부 보훈지청 복지팀														
장기복무 제대군인	강원서부 보훈지청 복지팀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분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 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p>▶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p> <table border="1"> <thead> <tr> <th>① 해당기관 신청</th> <th>② 해당기관 대상자 선정</th> <th>③ 선정 대상자 인터넷 청약</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해당 기관에 신청 ※ 미신청 시 접수 불가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된 고객은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필수 ※ 인터넷 청약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대상 제외 </td> </tr> </tbody> </table>	① 해당기관 신청	② 해당기관 대상자 선정	③ 선정 대상자 인터넷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해당 기관에 신청 ※ 미신청 시 접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된 고객은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필수 ※ 인터넷 청약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대상 제외 										
① 해당기관 신청	② 해당기관 대상자 선정	③ 선정 대상자 인터넷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해당 기관에 신청 ※ 미신청 시 접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된 고객은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필수 ※ 인터넷 청약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대상 제외 														
<p>▶ 당첨자 선정기준 및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 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본 안내문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당첨자 선정기준 및 유의사항																

※ 본 안내문은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오류·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